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07일

영종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 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배	김 *배 1959-01-02	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457번길 (운북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07